

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

신청법인 (인수법인)	①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	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	
피인수법인	⑥ 법인명	⑦ 사업자등록번호	
	⑧ 대표자 성명	⑨ 개업일	
	⑩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	
	⑪ 취득일 전의 사업 종류		
주식취득일	년 월 일	주식 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	
		⑫ 계(⑬+⑭)	⑬ 주식(출자지분) 가 액 ⑭ 기타

세액공제 계산내용

기술가치 산정 금액	⑮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피인수법인의 특허권등 평가 금액× 지분비율 (다만,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함) $\text{Max}[(\text{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} - \text{순자산시가}) \times \text{지분비율}, 0]$	
	⑯ 지급대가 중 피인수법인의 특허권 등의 해당 금액 (⑰- ⑱)	
	⑰ 피인수법인에게 지급한 매입가액	
	⑱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[(⑲-⑳) × 130% × 지분비율]	
	⑲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(특허권등 평가가액 제외)	
	㉑ 피합병법인의 부채총액	
	㉒ 기술가치산정금액(⑮, ⑯ 중 선택한 금액)	
㉓ 세액공제금액 (㉒×10%)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조의4제12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⑮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「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의3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취득의 현재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.